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6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향입법 등으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 제시행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1419호) 및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 관리 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1418호)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일부 지자체의 업무처리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현행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액관리제 및 운송비용전가금지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해 특별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법령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지자체 신고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0조)

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운영계획에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여객터미널 및 관광지 등 주요교통시설에 운행조치, 전용승차대 설치 및 택시 외부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및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교통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검토의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 : 044-201-4755 / 팩스 : 044-201-5581
- 이메일 : csw7168@korea.kr